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합1162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정

담당변호사 천정환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가. 피고 A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423,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순번 제6 내지 9항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30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순번 제10항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 조세 체납

1) D은 2019. 5. 15. E조합에 서울 영등포구 F 대 333.5㎡와 그 지상 5층 건물을 매매대금 3,8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E조합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300,000,000원은 2019.

7. 12., 잔금 2,050,000,000원은 2019. 9. 10.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D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2) D은 위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9. 11. 26. 양도소득세 692,995,887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346,497,943원과 346,497,944원으로 분납할 계획을 밝혔다.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D에게, 2020. 1. 9. 납부기한을 2020. 1.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349,789,670원을, 2020. 3. 11. 납부기한을 2020. 3.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349,703,040원을 각 고지하였고, 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이중 공제하였음을 확인하여

2020. 5. 4. 납부기한을 2020. 5. 31.로 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39,805,680원을 고지하였다.

3) D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7,997,485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9. 12. 5. D에게 납부기한 2019. 12. 31.로 하여 부가가치세 28,284,450원을 고지하였다.

4)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이 D에게 부과 · 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D의 체납액은 2020. 11. 5. 기준으로 아래 표의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양도소득세	2019. 1.	2020. 1. 19.	2020. 1. 31.	349,789,670	383,894,140
양도소득세	2019. 1.	2020. 3. 11.	2020. 3. 31.	349,703,040	378,553,520
양도소득세	2019. 1.	2020. 5. 4.	2020. 5. 31.	39,805,680	42,492,550
부가가치세	2019. 7.	2019. 12. 5.	2019. 12. 31.	28,284,450	31,254,280
합계				767,582,840	836,194,490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 1) D은 피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자녀이다.
- 2) D은 2019. 6. 17. 피고 A과 피고 B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매도인 G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3) D은 2019. 6. 21. 피고 A에게 17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9. 7. 12. 2회에 걸쳐 피고 A에게 50,000,000원과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ATM 기기를 통해 피고 A 명의의 계좌에 120,590,000원을 입금하였다.
- 4) D은 2019. 7. 12. 2회에 걸쳐 피고 B에게 50,000,000원과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ATM 기기를 통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138,840,000원을 입금하였다.
- 5) D은 2019. 7. 12.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위와 같은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을 정리하면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36,194,4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2019. 9. 10.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9. 9. 30. 발생한 것이어서,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D의 형제자매들이 지급받은 1,884,616,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D의 형제자매들이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금액만큼 사해행위취소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현재 D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을 살피건대, 원고의 D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달의 말일인 2019. 5. 31.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2019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9. 12. 31. 성립하였으나, D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를 하기 전인 2019. 5. 15.에 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 직후에 위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 합계 836,194,490원이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D의 형제자매들이 지급받은 1,884,616,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D의 형제자매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거나 위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이 별지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악의

-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 3) 피고들은 원고의 세금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자발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로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D의 자녀 내지 손자녀들이고, 갑 제6호증의 6, 7,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D와 피고들이 2006. 8. 24.부터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동일한 주소지(2006. 8. 24.부터 2008. 1. 16.까지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호, 2008. 7. 7.부터 2019. 8. 19.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 2019. 7. 12. 16:11부터 21:29까지 사이에 J은행 문래역점, 구로역점, 신길동점 ATM 기기를 통해 소액으로 분산하여 D의 계좌에서 피고 A,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 피고 A, B이 증여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D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D의 이 사건 각 증여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4)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D의 피고 A에 대한 증여액 합계는 423,590,000원이고, 피고 B에 대한 증여액 합계는 308,840,000원이며, 피고 C에 대한 증여액 합계는 20,000,000원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836,194,490원에 이르러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 금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2) 피고들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금액 만큼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증여받은 금액 합계 423,590,000원, 피고 B은 증여받은 금액 합계 308,840,000원, 피고 C는 증여받은 금액 합계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풍, 판사 김현주, 판사 강창호

별지

목 록

순번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자	증여금액(원)	합계(원)
1	D	A	2019. 6. 17.	50,000,000	423,590,000
2			2019. 6. 21.	173,000,000	
3			2019. 7. 12.	50,000,000	
4			2019. 7. 12.	30,000,000	
5			2019. 7. 12.	120,590,000	
6		B	2019. 6. 17.	50,000,000	308,840,000
7			2019. 7. 12.	50,000,000	
8			2019. 7. 12.	70,000,000	
9			2019. 7. 12.	138,840,000	
10		C	2019. 7. 12.	20,000,000	20,000,000

-끝-

